



제422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6451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2
※ 참고자료	7
1.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 및 신고위반 처분 건수	7
2. 유사 입법례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안 제16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3.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3

0일 이상 휴업 -----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수수료) -----

-----.

1. ----- 같은 조 제2항제1호 -----

2. 3.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제1호를 -----

3. 4. (현행과 같음)

② -----

-----.

1.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1조제2항은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ii) 휴업, iii) 폐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사항을 제21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면서, 이 중 ii)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바꾸어 30일 미만의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¹⁾.

휴업은 일정 분야의 사업자가 사업주 및 구성원의 건강 문제 등 개인적 사유, 시설관리 등 영업상의 사유, 자연재해 등 외부적 요인, 비수기와 같은 경영상의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신고업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 조항은 해당 업종의 영업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휴업 시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휴업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고말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

1) 이하 안 제24조, 제45조, 제48조는 제21조제2항의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맞춤임.

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미만으로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다소 번거로운 신고 행위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반면, 30일 미만의 휴업에 대한 신고를 집계할 필요성은 중요 사항의 변경, 장기 휴업, 폐업 등에 비해 크지 않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방역위생관리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독업자)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면제해도 제도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8,765개사이고, 최근 4개년간('21~'24) 연평균 177건의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30일 미만 휴업건수는 연평균 2.75건으로, 실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및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다수의 입법례에서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며,

사업자 단체이면서 신고 접수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도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탄력적 영업활동 및 신고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자료 1]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 및 신고위반 처분 건수

○ 연도별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 건수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상기간 : '21.1.1.~'24.12.31.)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휴업 건수	84건	305건	163건	154건
30일 미만 휴업 건수	1건	5건	3건	2건
30일 미만 휴업 비율	1.2%	1.6%	1.8%	1.3%

○ 휴업신고 위반에 따른 처분 건수 : 경고 및 과태료 4건(총 4개사)

* 휴업신고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이후 폐업신고 위반에 따른 신고말소 2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대상기간 : ~'24.12.31.)

[참고자료 2]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5조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하거나 폐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53조)
「우편법」	•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45조의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정보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 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34조)
「공인중개사법」	• 개인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제21조)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40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 낙시터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제24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 하려면 허가관청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제6조의2)
「석탄산업법」	•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2조)
「수산업법」	•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9조)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8조)
「어선법」	• 어선중개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31조의5)
「원양산업발전법」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2조)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40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5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44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9조)
「축산법」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22조)
「행정사법」	•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 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45조의4)